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요령 개정

상공부고시 제83-36호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요령 개정

전자계산기, 주변기기 및 동부품(수출입 기별공고 CCCN 8453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계획 확인에 관한 요령(상공부고시 제82-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3. 8. 23

상 공 부 장 관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전자계산기, 주변기기 및 동부품(이하 "전자계산기등"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입케 함으로써 전자계산기 등의 보급·이용을 증대함과 동시에 전자계산기 등의 국산화에 필요한 부품개발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국산 전자계산기의 수요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계산기"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이용기술조직(시스템 소프트 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② "주변기기"라 함은 전자계산기에 직접 관련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 등을 말한다.

③ "부품"이라 함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조립 또는 유지보수용에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④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 2 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의 5 할 이상을 투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단체

4.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단,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제 3 조(전자계산기의 분류) 전자계산기 분류는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및 개인용 전자계산기(Personal Computer)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전자계산기의 개발촉진) ① 전자 계산기 등의 국산화개발 촉진품목은 아래와 같다.

1. 전자계산기 :

- 소형전자계산기(Mini Computer)
- 초소형전자계산기(Micro Computer, 오피스 컴퓨터 포함)
- 개인용전자계산기(Personal Computer)

2. 주변기기 :

- 인쇄장치(한글, 한자, 영문 등)
- 자기디스크 및 테이프장치(Floppy Disk 포함)
- 인텔리전트 터미널
- 기타 터미널류(CRT Terminal, Banking Terminal 등)

3. 부 품 류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전자계산기 등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의 촉진, 부품개발의 장려, 국산기기의 수요창출 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5 조(전자계산기 등의 수입계획 확인신청) ① 공공기관이 전자계산기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상공부장관에게 수입계획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전자계산기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기 전에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거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에게 수입계획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수입계획의 확인) ① 상공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입하고자 하는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기종의 적정성 및 국산기기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계획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계산기의 수입가격이 10만불 이상(임대의 경우 월 2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과 협의하여 확인한다.

②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 전자계산기 등의 수입계획을 확인한다.

1.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축진품목에 대하여는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정에 의거 수입계획을 확인한다.
2. 위의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자계산기 등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수입계획을 확인 하되 심의회가 추천하는 기종에 대하여 우선 수입하게 한다.
3. 개인용 전자계산기는 제 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가 전국민적인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종에 대하여는 수입하게 한다.

제 7 조(부품의 수입) ①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기 등의 국산화를 위하여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국산화 계획에 관한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 설치된 전자계산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전자공업 진흥회장의 수입계획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③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은 제 2 항의 수입계획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확인하며, 특별 세번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품에 대하여 일괄 수입 확인할 수 있다.

제 8 조(수입승인과 수입계획 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외국환은행장은 CCCN 845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공부장관 또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이 이 고시에 의하여 수입계획을 확인한 분에 한하여 동 확인서의 명세와 대조 확인후 수입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회한 수입계획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제 9 조(심의회 설치 운영) ① 전자계산기 등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 전자계산기 수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위원장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 위원

1. 상공부 정보기기과장
2.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과장
3.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교수(1인)
4.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시스템부장
5.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전산실 수석연구원

6. 한국데이터통신(주) 연구개발실장

○ 간사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진흥담당 이사

③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 4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계산기 등의 수입의 필요성
2. 전자계산기 등의 공급자가 첨단기술을 이전하거나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계산기 등을 구매함으로써 전자계산기 등의 국산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수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종의 선정
3. 개인용 전자계산기의 범국민적인 보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입할 필요성이 있는 기종의 선정

④ 심의회는 전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자계산기 등의 개발생산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제 3 항 제 2 호 및 제 3 호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83. 9. 1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이전에 수입계획 확인 신청된 분은 상공부고시 제82-28호('82. 7. 1)에 의거 처리한다.
3.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상공부고시 제82-28호 ('82. 7. 1)는 폐지한다.

별표 1 전자계산기형분류

구 분	초대형	대 형	중 형	소 형	초소형
판매가격 (천 \$)	1,500 미만 이상	1,500 미만 ~700 이상	700 미만 ~30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월임차료 (\$)		35,000 미만 ~15,000 이상	15,000 미만 ~7,000 이상	7,000 미만 ~2,000 이상	2,000 미만

- 주 : 1. 구분은 본체를 포함한 기본구성 시스템임.
 2. 판매가격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월임차료(정비료 포함)는 1년 계약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다.
 4. 개인용 전자계산기의 구분은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공지사항

IPU 및 ASTA 대비계획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국제의원연맹(IPU)·미국여행업자협회(ASTA)총회를 계기로 범 국민적인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어떠한 국제 행사도 원만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장차 국제통화기금(IMF)총회와 나아가서는 '86아시아 경기대회와 '88올림픽 등을 대비한 범 국민운동과도 연계되도록 하며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와 공공단체는 이를 지원·조성하며, 민간단체 주도로 질서 지키기, 환경정비, 위생시설 개선, 각종 서비스 개선, 명랑 분위기 조성등에 주력한다.

본 진홍회도 이에 따른 대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범 국민적인 협조와 참여에 부응, 회원업체에 홍보하고 「전자진홍」지에 게재하며, 한국전자전시회 참가업체 회의, 전자기술 세미나, 전기업체 품질관리 교육등 기타 각종 회의나 교육시 계몽·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회원업체에서도 동행사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사업내용

가. IPU, ASTA총회의 의의는 국력신장 및 국

제적 지위향상의 결과임.

나. 실시사항

1) 질서지키기

가) 사내 : 식당질서확립, 작업질서확립, 사내 도보화립

나) 사외 : 승차질서, 횡단도보, 좌측 통행실시.

2) 환경정비

가) 사내 : 작업장, 사옥환경, 조경정비 등.

나) 사외 : 회사주변, 개인가옥청소.

3) 위생시설 개선

가) 사내 : 작업장, 식당, 기숙사, 화장실시설 정비 등.

나) 사외 : 개인가옥 퇴색손질, 화장실 소독, 부엌환경 개선.

4) 각종 서비스 개선

가) 사내 : 방문자 친절안내 및 면회 장소지원.

나) 사외 : 노약자 및 외국인에 대한 친절안내 등.

5) 명랑분위기 조성

가) 사내 : 휴식시간 이용한 레크레이션 및 체육시간 이용.

나) 사외 : 스마일운동 및 먼저인사 하기등

투자상담실안내

한국산업은행은 지금까지의 상담업무를 활성화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투자상담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

○ 시설·운영자금 용자안내

국민투자기금, 기술개발자금, 기계국산화자금, 계획조선조성자금, 에너지합리화기금, 전 대차관자금 등

○ 사채인수 및 보증업무 안내

○ 경영, 기술상담 및 용역업무 안내

○ 외자도입알선

○ 산업, 경제, 금융정보 제공

□ 상담방법

직접 내방하시거나 전화, 서면에 의한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상담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대문로 2가 140-1 한국산업은행 투자상담실

전화 : 교환 771-65(구내 400) 직통 753-4639